

# 청탁금지법 상담기록부

<b>상담일시</b>	2018. 9.	<b>상담장소</b>	감사담당관실
<b>신청자</b>	르르르	<b>상담자</b>	청탁방지담당관
<b>상담유형</b>	부정청탁 / 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border-radius: 50%; padding: 2px;">금품수수</span> / 외부강의 / 기타		
<b>상담내용</b>	<p><b>(질의)</b></p> <p>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아 반환한 경우에도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</p> <p><b>(답변)</b></p> <p>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9조 제1항,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칙(법 제22조 제1항 제1호) 또는 과태료(법 제23조 제5항 제1호)가 부과됩니다.</p> <p>한편,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(법 제9조 제1항 제1호),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(법 제21조).</p> <p>따라서,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라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</p>		
<b>비 고</b>			